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142

제출년월일 : 2026.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가칭) ‘한서생활체육관’을 신규 조성함에 따라 조례에 해당 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을 그 성격과 기능에 맞게 개편하여 구민 이용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제11조)

나.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다.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라.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마.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10. 15. ~ 2026. 11.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법무팀 의견]

관 계 법 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무팀 검토의견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을 그 성격과 기능에 맞게 개편하여 구민 이용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강료”를 “개인사용료 중 기본타석료와 수강료”로 한다.

3. 개인사용료 중 이용자 추가사용료의 전액 면제 :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한서생활체육관의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당인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당인동)
	다목적체육관	요가, 댄스, 음악줄넘기, 호신술, 유아체육, 팝송, 노래교실, 바둑교실, 토탈공예, 서예교실, 도자기 교실등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건강관리센터	남·여 사우나	
공덕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19 (공덕동)
한서 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음악줄넘기, 스포츠댄스, 유아·청소년 체육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4바길 53(염리동)
	다목적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 18세 어린이 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볼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당인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 관리센터	성인·청소년	7,000 ~ 12,000	
		어린이	6,000 ~ 12,000	
공덕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한서 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스크린 파크골프장	성인·청소년 ·어린이	<기본타석료> 12,000 ~ 20,000 <이용자 추가사용료> 3,000 ~ 5,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4.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기본타석료는 2시간, 1타석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 추가사용료는 이용자 1명당 부과한다. 1타석당 이용인원은 4명 이내로 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당인구민 체육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체육실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GX3·다목적실1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GX1· GX2·다목적실2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실3	10,000 ~ 30,000	20,000 ~ 40,000	
한서 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스크린 파크골프장	(체육경기 시) 평일 : 70,000 ~ 100,000 토요일·공휴일 : 8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타석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 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당인구민 체육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체육실	15,000 ~ 25,000	40,000 ~ 60,000	
	GX3·다목적실1	10,000 ~ 15,000	15,000 ~ 25,000	
	GX1· GX2·다목적실2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실3	10,000 ~ 15,000	5,000 ~ 10,000	
한서 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다목적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개인사용료 중 이용자 추가사용료의 전액 면제 :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별표 1에 따른 한서생활체육관의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중 레슨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⑧ ---------- 개인사용료 중 기본타석료와 수강료 ----------.
[별표 1]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 (염리동)
	다목적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체육관	종합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 (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 (염리동)
	다목적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체육관	종합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 (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마포 365 구민 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당인동)
	다목적체육관	요가, 댄스, 음악줄넘기, 호신술, 유아체육, 팝송, 노래교실, 바둑교실, 토탈공예, 서예교실, 도자기 교실등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건강관리센터	남·여 사우나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 1길 19 (공덕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 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 (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 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 (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 (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성미산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당인 구민 체육 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당인동)
	다목적체육관	요가, 댄스, 음악줄넘기, 호신술, 유아체육, 팝송, 노래교실, 바둑교실, 토탈공예, 서예교실, 도자기 교실등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건강관리센터	남·여 사우나	
공덕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 1길 19 (공덕동)
한서 생활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음악줄넘기, 스포츠댄스, 유아·청소년 체육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 4바길 53 (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 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 (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 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 (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 (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한도 내로 함 ※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 18세 어린이 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볼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관리센터	성인·청소년	7,000 ~ 12,000	
		어린이	6,000 ~ 12,000	
공덕 심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한도 내로 함 ※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13세~18세 어린이 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볼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당인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관리센터	성인·청소년	7,000 ~ 12,000	
		어린이	6,000 ~ 12,000	
공덕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한서생활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스크린파크골프장	성인·청소년·어린이	<기본타석료> 12,000 ~ 20,000 <이용자	

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마포365구민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체육실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GX3·다목적실1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GX1·GX2·다목적실2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실3	10,000 ~ 30,000	20,000 ~ 40,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1면, 10시간
				추가사용료> 3,000 ~ 5,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4.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기본타석료는 2시간, 1타석 기준으로 하며, 이용자 추가사용료는 이용자 1명당 부과한다. 1타석당 이용인원은 4명 이내로 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당인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체육실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GX3·다목적실1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 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체육실	15,000 ~ 25,000	40,000 ~ 60,000	
	GX3·다목적실1	10,000 ~ 15,000	15,000 ~ 25,000	
	GX1· GX2·다목적실2	10,000 ~ 15,000	10,000 ~ 20,000	
	GX1· GX2·다목적실2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실3	10,000 ~ 30,000	20,000 ~ 40,000	
한서 생활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스크린 파크골프장	(체육경기 시) 평일 : 70,000 ~ 100,000 토요일·공휴일 : 8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타석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 생활 체육관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당인구민 체육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체육실	15,000 ~ 25,000	40,000 ~ 60,000	
	GX3·다목적실1	10,000 ~ 15,000	15,000 ~ 25,000	
	GX1· GX2·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실3	10,000 ~ 15,000	5,000 ~ 10,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다목적실2			
	다목적실3	10,000 ~ 15,000	5,000 ~ 10,000	
한서 생활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다목적 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운영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 2027. 1 ~ 2031. 12
- 수탁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체육관운영수입	148,032	235,008	242,058	249,319	256,799	1,131,216
	소계(a)	148,032	235,008	242,058	249,319	256,799	1,131,216
세출	○ 체육관운영비	568,693	642,885	663,463	684,846	707,065	3,266,952
	소계(b)	568,693	642,885	663,463	684,846	707,065	3,266,952
□ 총 비용(a-b)		△420,661	△407,877	△421,405	△435,527	△450,266	△2,135,736

4. 재원조달 방안

- 매년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 시 소요 재원 전액(구비 100%) 반영

5. 덧붙이는 의견

〈세입부분〉

- 2027년 세입은 개관 시점을 고려하여 8개월 운영분을 적용하여 산정함
-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사항은 미반영하여 산정함
- 프로그램 질적 개선 및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매년 전년 대비 3%의 세입 증가율을 적용함

〈세출부분〉

- 인건비 연 5%의 인상률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은 물가상승률 연 2%를 반영함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경제국 체육진흥과 이효진
연 락 처	02-3153-9855